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20명 이내 위촉(비상근직 임기2년)

나.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주요업무 :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 및 도시의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 주요대상 :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다. 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 준수사항, 해촉,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5. “공간환경”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사업부서”란 도시, 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시 관련부서를 말한다.

7. “지원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 1명을 위촉할 수 있고, 공공건축가를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설계분야 전공 대학(원)생 또는 졸업자(졸업 후 3년 이내인자)를 청년예비건축가로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①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자문

3.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4. 그 밖에 건축·도시재생·경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개별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업무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③ 총괄건축가는 사안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청년예비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협조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한 사업들을 목록화하고, 수행한 업무내용을 정리·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자문대상 범위) 민간전문가의 자문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도시·경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발주(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3. 시에서 발주 또는 위탁하는 경관사업

4.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6조(민간전문가 자문 절차) ①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 및 세부 자료(필요시 배치도 등을 포함한다)를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에서는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 후 총괄건축가에게 송부하고, 자문 일정 등을 민간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유선 또는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자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며, 지원부서의 장은 자문 후 자문의견서를 사업부서에 수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자문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해당사업에 대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건축가의 종합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민간전문가는 자문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원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지원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결과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문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해당사업 종료 시까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원칙 및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

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보수)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여비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년예비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초급기술자 노임단가가 1/2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				
사 업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054-480-)	
사 업 의 규 모	위 치	(대지면적 : m ²)		
	사업내용			
	건축면적 (사업면적)		연 면 적 (주요시설)	
	구 조		층 수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공 정 별	☐ 기획 ☐ 공모 ☐ 설계 ☐ 시공 ☐ 운영·관리		
자문요청 주요내용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기획·계획단계 : 목적, 필요성, 수요·여건, 예산, 문제점 등) 2. 실수요자 의견서 (기획 또는 계획단계 제출) 3. 설계계획안 (계획 또는 설계가 시작된 경우, 설계안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공공건축가 자문서

안건명

신청부서

자문내용

본 안전에 대하여 상기내용과 같이 자문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 공공건축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공공건축가 자문 조치결과(계획)서					
안 건 명					
부 서 명		자 문 일	. . .	공공건축가	
자문내용 및 조치결과	○ 자문내용				
	○ 조치결과				
붙임 : 증빙자료(설계도면, 조감도 등) 1부.					
구미시 공공건축가 자문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총괄건축가 종합 의견서

안건명

당당부서

종합의견

본 안전에 대한 최종검토 결과 위와 같이 종합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 총괄건축가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월)

□ 근무현황

민간전문가 구분		성 명	
근무기간	. . . ~ . . .	근무일수	총 일

□ 근무내역

일 자	근무시간	주 요 활 동 내 용	서 명	비 고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담당자	계 장	과 장

[별지 제6호서식]

구미시 공공건축가 자문 관리대장

☐ 사업현황

사업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054-480-)	
사업의 규모	위치	(대지면적 : m ²)			
	사업내용				
	건축면적 (사업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구조		층수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공정별	☐ 기획 ☐ 공모 ☐ 설계 ☐ 시공 ☐ 운영·관리			

☐ 자문관리대장

연번	날짜	자문사항	자문의견	조치결과
1				
2				
3				
4				
5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위 조례안 제9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청년예비건축가 2명을 위촉·운영하고, 총괄건축가는 월 4회 근무, 공공건축가는 1인당 월 2회 자문, 청년예비건축가는 월 4회 근무를 전제함
- 나. 여비는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따르되 정확한 추산이 불가
- 다.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산출근거	산출내역	금액
총괄건축가 1인당 노임단가 390,500원	390천원×1명×4회×12개월	18,720천원 ※천원이하 절사
공공건축가 1인당 노임단가 390,500원	390천원×10명×2회×12개월	93,600천원 ※천원이하 절사
청년예비건축가 1인당 노임단가 91,290원	91천원×1명×4회×12개월	4,368천원 ※천원이하 절사

※ 노임단가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총괄 및 공공건축가 : 기술사(건설) 노임단가 (390,500원/일)
- 청년예비건축가 : 초급기술자(건설) 반일 기준 노임단가 (182,591원/0.5일)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도비						
시 비	116	116	116	116	116	580
민 간						
기 타						
합 계	116	116	116	116	116	580

5. 작성자 : 도시재생과 공공(민간)건축TF팀 이정화(054-480-5618)

소 관 부 서		도시재생과
입 안 자	과 장	이 창 수
	담 당	이 정 화 (480-5618)